

의안번호	2208559
의 퇴 인	허성무 의원
회 답 일	2025. 4. 9.
추계번호	25A123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의2제4항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정부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 (현행) <u>운영</u> 등에 필요한 경비를 <u>출연</u> 하거나 <u>보조</u> 할 수 있음 - (개정안) <u>운영 및 사업</u> 에 필요한 경비를 <u>출연</u> 함	의무규정
2	안 제25조의2제5항제8호 신설(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 (수탁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5조의2제4항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5조의2제5항제8호 신설(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주: 개정안은 해당 내용 외에 ①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사업과 ②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사업을 중소기업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안 제20조의2제7항 및 제20조의3제4항), 이는 현재 중소기업연구원이 수행 중인 사업¹⁾²⁾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므로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정수반요인에서 제외

1)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4839-472)

2)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4838-471)-중소기업지원사업 분석

* [참고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지원 사업 현황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①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안 제25조의2제4항), ②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위탁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같은 조 제5항제8호)
- (안 제25조의2제4항) 정부 세출예산상 편성되는 지원금의 비목이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되는 것만으로는 추가적인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나, ①출연금의 경우 용도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보조금과 달리 일반 재원으로 교부하여 피출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점, ②개정안에서 중소기업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현행 재량 지원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한 점¹⁾ 등을 고려할 때 시행될 경우 연구원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보조금의 경우 사용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도록 하여 피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등 기관의 일반운영을 위한 용도로 교부하는 것이 제한되고²⁾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는 반면, 출연금은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고 기관의 일반운영을 위한 용도로 교부할 수 있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또한 기관 세입에 계상됨³⁾
 - 현재 연구원은 정책연구, 현안대응, 연구기반구축 및 현황조사 등 사업 수행을 위한 용도로 보조금 예산만을 교부받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이를 출연금 예산으로 전환할 경우⁴⁾ 정부 세출예산상 연구원의 사업비와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경상운영비가 각각 구분되어 편성될 수 있으며, 출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역시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연구원의 세입으로 계상될 수 있음

1) (현행)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개정안) “출연한다”

2) 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거나 기금 전출금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관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나(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중소기업연구원은 수지차 보전 기관이 아니며 기금 전출금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3) 출연금과 보조금의 비교

*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지원 사업 현황

- 이 과정에서 기관의 일반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수요가 각각 반영되면서 연구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또한 국고로 반납되지 않아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등 순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안 제25조의2제5항제8호) 개정안에 따라 연구원의 사업 수행 범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포함될 경우 기존에 연구원이 위탁받아 수행 중인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연구원은 정부로부터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제도 운영 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지원 사업 현황

- 개정안이 현재 연구원에서 실시 중인 수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그친다면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해당 개정 규정은 특정 사업이 아니라 연구원의 일반적인 사업 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될

구분	출연금	보조금
정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대행하게 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
일반법적 근거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법적 근거	반드시 법률의 지원근거 필요 (「국가재정법」 제12조)	대부분 개별 법령에 “보조할 수 있다 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명기, 반드시 개별법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용도지정 여부	기관출연금의 경우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목적출연금의 경우 사용용도가 지정됨	반드시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자의 재량 여지가 없음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처리	기관운영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은 기관 세입에 계상 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 가능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중앙관서의 장은 사후정산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국고에 반환 처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자료: 국회의정연수원 「예결산검토 표준교재: 출연금」(2024.8.) p.6 일부 발췌

- 4) 다만, 법률상 지원 근거가 필요한 출연금과 달리 보조금은 반드시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안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보조 근거를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조금 예산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출연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제하고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를 검토함

경우 기존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이 확대되거나 신규 위탁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을 산출하려면 연구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 비목이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규모와 연구원의 수탁사업 확대 규모 등을 추산하여야 하나, 현실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소요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
 - 연구원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 증가 수준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른 연구원의 인력 확대 규모와 이로 인한 사무 공간의 확보 필요성, 신규 수탁사업의 내용과 실시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는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으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해당 사업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사업량의 증가 수준이 정부의 재원 추가 투입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이에 연구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연구원의 사업 범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가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지원 사업 현황(2025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코드)-내역사업명	사업 개요	수행방법	2025년도 예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3336-347)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제도운영	경영위기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위탁	468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4838-301)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법령 및 고시 등 제·개정 시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	보조	709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4838-471)	-	-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지원	보조	6,712
-중소기업지원사업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조사·성과평가 및 사전협의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재정지출 효율화	보조	3,799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정보화)(4839-472)	중앙부처·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의 수혜기업 지원이력정보, 사업공고, 기업의 성적서·인증서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 *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기업지원플러스(G4B) 총 3개	위탁	4,042
인력유입인프라조성(5431-302) -중소기업인사개선폭충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일자리 지표 우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일자리 평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고용촉진 및 기업 차원의 인력 유입 환경조성 유도	위탁	28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